

기업복지 멤버십 회계·세무 처리 안내서

도입 법인·개인사업자 CFO·재무팀·세무대리인 검토용 · 고객사 안내용

서비스 구분	임직원 금융교육·금융복지 목적 B2B 멤버십 플랫폼 이용권
제공 회사	주식회사 금융인바디
문서 용도	도입 고객사의 회계·세무 검토 및 내부 품의 참고 자료
기준 자료	한빛회계법인 윤태성 회계사 회신 의견
작성 기준일	2026.05.15.

안내서 사용 목적

본 안내서는 고객사의 CFO·재무팀·세무대리인이 금융인바디 기업복지 멤버십 도입 시 회계처리 방향을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입니다. 최종 회계·세무 처리는 고객사의 사실관계와 담당 세무·회계 전문가 판단에 따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눈에 보는 핵심 결론

검토 항목	기본 처리 방향	고객사 확인 포인트
회계 계정	직무관련성에 따라 교육훈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임직원의 직무 관련성 여부
비용처리	회사는 전액 비용처리 가능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용자 명단 등 증빙 보관
복리후생비 처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	임직원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는 복지 목적인지 확인
직원 과세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경우 근로소득 포함 및 원천징수 필요	급여 반영 및 원천징수 방식 세무대리인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면세·간이·겸영 여부 확인
개인사업자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	사업주 본인을 위한 지출은 손금 불산입 대상

2. 금융인바디 기업복지 멤버십의 거래 구조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금융인바디와 계약하여 소속 임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플랫폼 이용권을 구매합니다.
-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소속 임직원에게 앱·웹 이용 권한을 복리후생 또는 교육 목적의 플랫폼 이용권으로 제공합니다.
- 금융인바디는 고객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거래 구조는 헬스장 단체 이용권, 도서·교육 콘텐츠 구독권을 회사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구조와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계정과목 판단 기준

구분	처리 계정 예시	판단 기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교육훈련비	업무수행 역량 향상, 직무교육, 직원 교육훈련 목적이 명확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는 일반 복지 목적일 경우	복리후생비	임직원 금융복지, 생활 금융교육, 복지 플랫폼 이용권 제공 목적의 경우
기타 명목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급수수료 등 별도 검토	계약 구조, 수혜 대상, 제공 방식에 따라 고객사 회계정책에 맞춰 검토

회계사 회신 기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회계처리 계정과목은 교육훈련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회계처리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4. 직원 근로소득 과세 및 원천징수 안내

- 교육훈련비로 볼 경우 해당 비용이 임직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로 볼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제공 방식에 따라 과세소득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으므로, 고객사는 급여 반영 및 원천징수 처리 방식을 담당 세무대리인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부가가치세 처리

사업자 유형	매입세액 공제	처리 방향
과세사업자	가능	멤버십 이용권 구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가능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등	고객사별 확인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본계정(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
겸영업사업자	안분 여부 확인	과세·면세 겸영 여부에 따라 세무대리인 확인 필요

6. 법인·개인사업자·업종별 적용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 업종 및 면세사업자 여부에 따른 제약은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손금 불산입대상입니다.
-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본인 사용분과 직원 제공분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고객사 내부 품의 및 세무대리인 전달 문구

고객사 전달용 문구

금융인바디 기업복지 멤버십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임직원 금융교육·금융복지 목적으로 도입하는 B2B 멤버십 플랫폼 이용권입니다.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소속 임직원에게 앱·웹 이용 권한을 제공하는 구조이며, 직무관련성에 따라 교육훈련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원천징수 처리 여부를 고객사 세무대리인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도입 전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확인 내용	완료
도입 목적	임직원 금융복지 / 금융교육 / 직무교육 중 어떤 목적에 가까운지 정리	☐
수혜 대상	전체 임직원 또는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 범위 확인	☐
계정과목	직무관련성 있으면 교육훈련비, 일반 복지 목적이면 복리후생비 검토	☐
직원 과세	복리후생비 처리 시 근로소득 포함 및 원천징수 방식 확인	☐
부가세	과세사업자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확인	☐
증빙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용자 명단, 사내 도입 품의서 보관	☐
개인사업자	사업주 본인 사용분 제외 및 직원 제공분 관리	☐

9. 부록 · 회계사 회신 요약

구분	회신 요약
질문 1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교육훈련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복리후생비. 회사는 전액 비용처리 가능.
질문 2	복리후생비 처리 관련 특별한 요건은 없음.
질문 3	회계처리에 대한 법령근거는 없음.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적용.
질문 4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 업종 및 면세사업자 여부에 따른 제약 없음. 개인사업자 본인 지출은 손금 불산입 대상.
질문 5	제공 방식에 따라 과세소득 여부가 달라지지 않음.
질문 6	과세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본계정(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
종합 의견	고객사는 직무관련성에 따라 복리후생비나 교육훈련비로 회계처리하고,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 안내서는 고객사의 회계·세무 판단을 보조하기 위한 자료이며, 실제 처리 시 고객사 세무대리인 또는 회계담당자의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금융인바디